

의안번호	2218878
의 퇴 인	이해민 의원
회 답 일	2026. 7. 30.
추 계 번호	26F254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8년 157.1억 원 등 3년간 총 511.7억 원(연평균 170.6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 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9조의8 제5항)	-157.1	-170.2	-184.4	-511.7	-170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8 제5항 (통합고용세액공제)	○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29조의8 제5항 (통합고용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에 신고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- 육아휴직 복직자는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세법상 중소·중견기업에 국한해서 관측할 수 없으므로, 종사자규모 기준 300인 이하로 제한해 산출한 통계치로 대체

3. 상세 추계내역

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,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과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형태로 시행 중
 - (개정연혁)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.12.24. 신설된 규정으로 2022.12.31.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 - 2018.12.24. 신설: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(중소 10%, 중견 5%)
 - 2020.12.29. 일부개정: 2022.12.31.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상향(중소 30%, 중견 15%)
 - 2022.12.31. 일부개정: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
 - 육아휴직 복직자 수에 기업규모별 공제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- 공제금액: (중소기업) 1,300만 원, (중견기업) 900만 원
- 적용요건: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적용
- 배제규정: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 미적용

□ (감면실적)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84.5억원 수준

[표 2]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실적: 2024년

(단위: 억원)

기업규모	신고 법인수	금액
중소기업	258	45.0
중견기업	138	39.5
합계	396	84.5

자료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

2) 추계방법

□ 2024년 세액공제 실적에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 및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결합하여 향후 중소·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 규모를 추계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·중견기업에 국한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을 관측할 수 없으므로, 상시고용자 수 기준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
 - 세법상 기업규모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, 자산총액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등이 판정요소임
- 「일가정양립실태조사」의 종사자규모별 육아휴직복귀율의 평균값을 적용

□ (육아휴직급여 수급자)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- 최근 5년(2021~2025년) 증감율은 종사자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편임
 -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(월 최대 150만원→250만원), 사후지급금 제도¹⁾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함

1) 급여의 일부를 회사 복귀 후 지급하는 방식에서 육아 휴직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

[표 3]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종사자규모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환산 증감률	
						'21~'24	'21~'25
300인 미만	61,200	73,943	72,710	77,783	110,767	8.3	16.0
300인 이상	49,355	57,141	53,298	54,744	73,560	3.5	10.5
합계	110,555	131,084	126,008	132,535	184,329	6.2	13.6

자료: 고용노동부, 고용보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연도별 통계

□ (육아휴직 후 복귀율)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연도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

○ 종사자규모별로 상이한 추이를 보이므로,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적용

[표 4] 육아휴직 후 복귀율

(단위: %)

종사자규모	2020	2021	2022	2023	2024	기간평균
300인 미만	85.6	82.4	89.4	79.4	80.1	83.4
300인 이상	94.1	96.7	96.6	99.1	92.3	95.8

주: 복귀율은 복귀 후 지속근무 및 단축근무 요청의 빈도를 기준으로 산출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일가정양립실태조사」

□ (감면세액 추정)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5년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의 평균값을 결합하여 추계

○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기준으로, 공제액은 기준연도 금액에 2024년 대비 복귀율(83.4%/80.1%)를 반영한 뒤, 이후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감률(8.3%)만큼 증가하는 방식으로 산출함

- 이에 따라, 다음 해에는 기준연도 대비 약 112.7%, 2년 후에는 약 122.1%, 이후에도 매년 동일한 증가율이 누적되는 방식을 적용
-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2025년의 급격한 증가는 해당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반영하고, 이후 기간에는 2021~2024년의 연환산 수급자 증감률을 적용

[표 14] 신고연도 기준 감면세액 추정치: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
중소기업	83.7	90.6	98.2
중견기업	73.5	79.6	86.2
합계	157.1	170.2	184.4

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8년 157.1억 원 등 3년간 총 511.7억 원(연평균 170.6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8~2030년까지 발생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 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9조의8 제5항)	-157.1	-170.2	-184.4	-511.7	-170.6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